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 장기요양기관 〉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세행정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22년 귀속 자료를 '23년 1월 7일(토)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제출 자료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 + 비보험)
자료 제출 기한	'23. 1. 7.(토) (단, 부득이한 경우 1.13.(금))
자료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2022년 12월 일



'22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

1 제출 대상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 제출 자료 : '22년 귀속 본인 일부 부담금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자료

※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 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료 제출 방법



-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ID로 로그인해서 아래 ① 또는 ② 방법에 따라 제출
① 텍스트 파일로 제출 :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 468)의 「'22년_전산매체제출요령 의료비-요양기관」 참조
② 엑셀 서식으로 제출 :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 468)의 엑셀서식(의료비)에 기재하여 제출

4 자료 제출 기한

자료제출기한	내 용	일 정
	원칙	'23.1.7.(토) 22시
	부득이한 경우	'23.1.13.(금) 22시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	'23.1.15.(일)~1.18.(수) 18시~22시

* 간소화 서비스 개통(1.15.) 이후로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 제출 가능

5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엑셀 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